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32

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김위상·김선교·박정훈

이종배 • 박정하 • 김주영

임이자 · 강승규 · 백종헌

김은혜 • 고동진 • 이달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, 사회복지시설, 소득증대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례와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최근 기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로부터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데, 이와 같이 청년 창업에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9조 및 제12조).

법률 제 호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"청년창업기업"이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자에"를 "자와 청년창업기업에"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"를 "대부받거나 매수한 자와 청년창업기업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	
다.	–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. "청년창업기업"이란 「중소
	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11
	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제9조(국유재산에 대한 특례) ①	제9조(국유재산에 대한 특례) ①
시·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	
는 국유재산(「국유재산법」	
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	
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)을	
교육용시설, 사회복지시설, 문	
화시설, 공공체육시설, 소득증	
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	
원시설로 활용하려는 <u>자에</u> 대	자와 청년창업
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	<u>기업에</u>
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,	
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	
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	
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	
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	
다.	

② (생략)

제12조(보조금의 지급 등) ① 국 지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, 사회복지시설, 문화시설, 공공체육시설,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·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있다.

② (생 략)

② (연행과 살음)
에12조(보조금의 지급 등) ①
<u>प</u> ो
부받거나 매수한 자와 청년창
<u>업기업에</u>
② (현행과 같음)